

2019.11.29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 예고 안내

I. 개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7-41호) 관련 행정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I. 주요사항

1. 개정 사유

- 국무조정실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규제개선 과제로 결정된 사항 반영
 - >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세트물품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HS 번호가 상이 하더라도 예외 인정
- 과거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예외적 원산지표시로 인정하던 "Assembled in 국명" 등 방식에 대한 인정여부 명확화

2. 개정 내용

가. 규제 재검토 기한 연장 (국무조정실 심의 결정사항, 5년)

-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기준 →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등 개선 조치

나. 수입세트물품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4조 [별표2의1])

- HS 번호를 삭제하여 수입세트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세트물품 표시 대상으로 인정 및 개별물품 원산지가 동일하고 세트물품에 부합하면 판매포장에만 원산지표시 허용
- 개인용 여행세트 물품은 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HS 9605 추가

2019.11.29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 예고 안내

II. 주요사항

2. 개정 내용

다.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표시방법 인정 예시 추가 (§8조 제6호)

- 내부 지침 및 유권해석으로 인정하고 있는 표기방법 고시 반영
-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명시
- “Country of Origin : 국명” 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인정되어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에서 삭제 (조문 정리)

◇ 의견제출 방법 :

-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당자 : 박시원 (042-481-7832), 남기범 (042-481-7855)
- 제출기한 : 2019.12.
- 제출방법 :
 - 이메일 : wonipp@korea.kr , nampum123@korea.kr
 - 팩스 : 042-481-783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 시행일자 : 2019.12.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규대조표 : “붙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③ <생략></p> <p>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1과 같다.</p>	<p>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 (규제개선) HS번호가 상이하더라도 개별물품 원산지가 동일하고 세트물품에 부합하면 판매포장에만 원산지표시 허용</p> <p>- 다만, 개인용 여행세트 물품은 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HS 9605 해당 여부 표시</p>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2의1> 수입세트물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HS 번호</th> <th style="text-align: center;">품 목 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6.50</td> <td>구급상자와 구급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략)</td> <td>(중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103.21 6103.29</td> <td>남자 또는 소년용의 <u>양상블</u>(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104.21 6104.29</td> <td>여자 또는 소녀용의 <u>양상블</u>(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203.21 6203.29</td> <td>남자 또는 소년용의 <u>양상블</u>(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204.21 6204.29</td> <td>여자 또는 소녀용의 <u>양상블</u>(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략)</td> <td>(중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605</td> <td>개인용의 여행세트</td> </tr> </tbody> </table>	HS 번호	품 목 명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중략)	(중략)	6103.21 6103.29	남자 또는 소년용의 <u>양상블</u>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104.21 6104.29	여자 또는 소녀용의 <u>양상블</u>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203.21 6203.29	남자 또는 소년용의 <u>양상블</u>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6204.21 6204.29	여자 또는 소녀용의 <u>양상블</u>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중략)	(중략)	9605	개인용의 여행세트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2의1> 수입세트물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삭제></th> <th style="text-align: center;">품 목 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구급상자와 구급대</td> </tr> <tr> <td></td> <td>(중략)</td> </tr> <tr> <td></td> <td>남자 또는 소년용의 <u>양상블</u></td> </tr> <tr> <td></td> <td>여자 또는 소녀용의 <u>양상블</u></td> </tr> <tr> <td></td> <td>(중략)</td> </tr> <tr> <td></td> <td><u>HS 9605에 해당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u></td> </tr> </tbody> </table>	<삭제>	품 목 명	<삭제>	구급상자와 구급대		(중략)		남자 또는 소년용의 <u>양상블</u>		여자 또는 소녀용의 <u>양상블</u>		(중략)		<u>HS 9605에 해당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u>
HS 번호	품 목 명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중략)	(중략)																																
6103.21 6103.29	남자 또는 소년용의 <u>양상블</u>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104.21 6104.29	여자 또는 소녀용의 <u>양상블</u>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203.21 6203.29	남자 또는 소년용의 <u>양상블</u>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6204.21 6204.29	여자 또는 소녀용의 <u>양상블</u>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중략)	(중략)																																
9605	개인용의 여행세트																																
<삭제>	품 목 명																																
<삭제>	구급상자와 구급대																																
	(중략)																																
	남자 또는 소년용의 <u>양상블</u>																																
	여자 또는 소녀용의 <u>양상블</u>																																
	(중략)																																
	<u>HS 9605에 해당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u>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u>Country of Origin : 국가명</u>")</p>	<p>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 "<u>Assembled in 국가명</u>", "<u>Brewed in 국가명</u>", "<u>Distilled in 국가명</u>")</p>	<p>○ 내부 지침(15.12) 및 유권해석으로 인정하고 있는 표기방법 고시 반영("Assembled in 국가명" 등)</p> <p>○ (조문 정리) "Country of Origin : 국가명" 표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4호에 따라 인정</p>
<p>제5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55조(재검토기한) ----- ----- -----<u>2020년</u>----- -----.</p>	<p>○ 재검토기한 재설정</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제56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15년</u>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56조(규제의 재검토) ----- -----<u>2020년</u>----- ----- -----</p>	<p>○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국무조정실, '19.6.28) 일몰연장(5년)</p>
<p>부 칙 <신 설></p>	<p>부 칙 <u>이 고시는 2019년 12월 일부</u>부터 시행한다.</p>	